

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14일		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	
	자택 주소		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 전자우편주소: 우편물 수령:[]자택 []직장 []직접수령				
	직장명							
	직장 주소			신청등급 []1급 []2급				
최종학력	구분		기간		학교명		전공명	
	[]대학원(박사)							
	[]대학원(석사)		[. . .]부터					
	[]대학		[. . .]까지					
[]전문대학								
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	교과목이수학교		대학원[] (석·박사)		대학[]		전문대학[]	
					평가인정 학습과정		기타[] ()	
	필수 교과목		[]사회복지학개론		[]사회복지법제와 실천		[]사회복지실천기술론	
			[]사회복지실천론		[]사회복지정책론		[]사회복지조사론	
			[]사회복지행정론		[]사회복지현장실습		[]인간행동과 사회환경	
			[]지역사회복지론					
	선택 교과목		[]가족복지론		[]가족상담 및 가족치료		[]교정복지론	
			[]국제사회복지론		[]노인복지론		[]복지국가론	
			[]빈곤론		[]사례관리론		[]사회문제론	
			[]사회보장론		[]사회복지역사		[]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	
[]사회복지와 인권			[]사회복지윤리와 철학		[]사회복지자료분석론			
[]사회복지지도감독론			[]산업복지론		[]아동복지론			
[]여성복지론			[]의료사회복지론		[]자원봉사론			
[]장애인복지론			[]정신건강론		[]정신건강사회복지론			
사회복지현장실습		기간		실습기관		기관실습 지도자		
		실습세미나 교수						
		[. . .]부터						
		[. . .]까지						

1. 본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(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)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. (확인 [])

<결격사유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.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장

귀하

첨부서류	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) 2.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3cm×4cm) 2장	수수료 1만원
------	---	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